

# 濟州島 家族制度의 特徵

李 昌 基

社會文化嶺南學會「社會文化論叢」第8集 別刷

1993.

# 濟州島 家族制度의 特徵

李 昌 基\*

## 〈目 次〉

- |                |                               |
|----------------|-------------------------------|
| I. 序論          | IV. 財産相續과 祭祀相續                |
| II. 家口構成과 그 變化 | 1. 財産相續                       |
| 1. 家口의 크기      | 2. 祭祀相續                       |
| 2. 家口構成        | V. 親族關係                       |
| III. 家族制度      | 1. 父系親族組織의 弱화                 |
| 1. 長男分家        | 2. 外家親族 및 妻家親族과의 긴밀한 關係       |
| 2. 婚姻과 離婚·再婚   | VI. 濟州島 家族制度의 非父系的 要素와 父系的 要素 |
| 3. 家族關係        |                               |

## I. 序 論

濟州島의 가족제도는 조선 중기 이후의 전통적인 한국가족과는 적지 않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철저한 長男分家, 財産相續의 均分傾向, 部落內婚, 門中組織의 약화, 높은 離婚率과 再婚率, 육지와 상이한 婚姻儀禮, 死婚의 慣習, 祖上祭祀의 分割等 제주도 가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들은 가계계승과 부계친족집단의 조직화를 특징으로 하는 육지부의 전통가족과는 매우 상이한 모습들이다.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제주도 가족의 특성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지만, 제주도 가족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체로 1970년 이후의 일로서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지 않다.

제주도 가족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학자로서는 먼저 玄容駿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 무속과 민간신앙 분야에서 의욕적인 현지조사를 진행하던 현용준은 가족제도에도 관심을 가져 가족형태, 분가와 상속, 친족관계 등에 관한 조사보고(1970, 1973)를 발표하고, 제주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대 국문학과 학생들의 사회조사활동을 지도하여 부락단위의 조사보고(1972, 1973, 1974, 1975)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내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활동들이 아직 미숙하고 단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제주도 가족연구에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같은 시기에 외부에서도 李光奎(1973)와 佐藤信行(1973)이 제주도 가족에 관심을 가지고 그 특성을 소개하고 있다.

1975년 崔在錫이 제주도 가족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제주도 가족연구는 단연 활기를 띄기 시작한다. 그는 1975년부터 1978년까지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그 결과를 묶어 단행본(1979)으로 출판하여 제주도 가족연구를 질·량 면에서 한단계 성숙시키고 있다. 이 시기에 玄容駿(1977)은 제주도의 喪祭에 관한 논문에서 喪祭禮과정에서의 친족의 기능과 조상제사의 분할관행을 심도있게 분석한 바 있다.

1980년 이후에는 제주사회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이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가족에 관한 연구가 다소 침체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가족관계(金惠淑, 1982, 1984, 1985, 1986), 가구구성(李昌基, 1987, 1988, 1992a), 제사분할(竹田 旦, 1984; 李昌基, 1991, 1992b) 등의 분야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 동안의 제주도 가족에 관한 연구들은 학자들의 관심 영역에 따라 가족제도 및 친족제도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 및 가족의 내부구조에 관한 연구, 가족의 외적 형태 및 가족유형에 관한 연구 등 크게 세 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李昌基, 1988).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분야는 역시 가족 및 친족제도에 관한 분야이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연구 업적들이 축적되어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금까지의 연구업적들을 종합하여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 앞으로 제주도 가족연구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 II. 家口構成과 그 變化

### 1. 家口の 크기

濟州島 家族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특성들은 현실의 가족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가구구성이 매우 단순하고, 가구규모도 다른 지방에 비해 매우 작은 소규모 가구를 유지하게 되었다(李昌基, 1987, 1988, 1992a).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인구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25년부터 거의 매 5년마다 시행된 국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의 가구당 평균인원을 산출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가구당 평균인원 (인)

| 년도 | 1925 | 1930 | 1935 | 1940 | 1955 | 1960 | 1966 | 1970 | 1975 | 1980 | 1985 |
|----|------|------|------|------|------|------|------|------|------|------|------|
| 전국 | 5.24 | 5.26 | 5.30 | 5.34 | 5.45 | 5.57 | 5.49 | 5.27 | 5.04 | 4.55 | 4.16 |
| 서울 | -    | -    | -    | -    | 5.38 | 5.30 | 5.01 | 4.95 | 4.79 | 4.40 | 4.08 |
| 부산 | -    | -    | -    | -    | -    | 5.37 | 5.11 | 4.95 | 4.77 | 4.44 | 4.12 |
| 제주 | 4.02 | 4.08 | 4.09 | 4.15 | 4.50 | 4.27 | 4.38 | 4.32 | 4.44 | 4.32 | 4.11 |

【자료】 각년도 국세조사보고서  
李昌基, 1987:184-185.

<표 1>에 의하면 1925년부터 197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가구원수가 5.24인~5.57인 정도로 나타나는데 비해 제주도는 이보다 1.0인~1.3인 적은 4.02인~4.50인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가구규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도시인 서울이나 부산보다도 더욱 작은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에 수반해서 한국가족이 전반적으로 핵가족화 됨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는 제주도와 전국의 가구규모의 차이가 현저하게 축소되어 1985년부터는 거의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가구원수와 더불어 가구원수별 가구의 분포도 가구의 크기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된다. 제주도의 가구원수별 가구분포를 1960년, 1975년, 1985년의 센서스 자료를 가지고 한국 전체와 비교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

| 가구원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11인이상 | 계     |
|------|------|------|------|------|------|------|------|------|-----|-----|-----|-------|-------|
| 전국   | 1960 | 2.3  | 7.1  | 11.8 | 14.7 | 15.9 | 15.3 | 12.7 | 8.9 | 5.4 | 2.7 | 3.0   | 99.8  |
|      | 1975 | 4.2  | 8.3  | 12.3 | 16.1 | 18.3 | 16.6 | 11.7 | 7.7 | 2.5 | 1.3 | 1.0   | 100.0 |
|      | 1985 | 6.9  | 12.3 | 16.5 | 25.3 | 19.5 | 12.4 | 4.2  | 1.9 | 0.7 | 0.3 | 0.1   | 100.1 |
| 제주   | 1960 | 9.0  | 15.3 | 17.4 | 16.9 | 14.1 | 11.1 | 7.5  | 4.5 | 2.3 | 1.2 | 0.8   | 100.1 |
|      | 1975 | 12.2 | 11.9 | 13.0 | 14.4 | 15.0 | 13.9 | 10.0 | 6.4 | 1.9 | 0.8 | 0.5   | 100.0 |
|      | 1985 | 12.7 | 11.8 | 13.9 | 19.6 | 18.9 | 14.4 | 5.0  | 2.3 | 0.9 | 0.3 | 0.2   | 100.0 |

【자료】 각년도 국세조사보고서.  
李昌基, 1987:188.

<표 2>에 나타난 제주도의 가구원수별 가구분포를 전국적인 경향과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두가지 특징을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다(李昌基, 1987, 1988).

첫째, 1970년대 중반까지 제주도의 가구원수별 가구분포는 4인 이하(1975년에는 3인 이하)의 소인수 가구의 비율이 전국보다 높고, 5인 이상(1975년에는 4인 이상)의 비교적 다인수 가구의 분포비율은 제주도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까지 제주도의 평균가구원수가 전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던 것과 경향을 같이 하고 있다.

둘째, 소인수 가구 중에서 특히 1人家口(단독가구)의 비율이 제주도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金惠淑, 1985; 李昌基, 1987). 전국적으로 1人家口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전체 가구수의 2.3%(1960년)~6.9%(1985년) 정도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비해 제주도는 9.0%(1960년)~12.7%(1985년)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평균가구원수가 적고, 소인수가구(특히 1인가구)의 비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장남까지도 분가하는 제주도 특유의 가족제도와 더불어 일제하의 과도한 인구이출과 4·3 사건에 의한 과도한 남성인구의 결손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李昌基, 1987, 1992a).

그러나 제주도의 가구원수별 가구구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국적인 변화추세와는 매우 상이한 경향이 발견된다.

즉 1960년부터 1985년까지 전국적으로 소인수가구의 분포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다인수가구의 분포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제주도에서는 1975년까지 (단독가구의 증가를 예외로 한다면) 소인수가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오히려 다인수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역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1975년 이후에는 소인수가구가 감소하고 다인수가구가 증가하는 제주도 특유의 변화양상이 상당히 진정되고 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 제주도에서는 평균치를 둘러싼 4인~5인가구의 비율이 약간 상승하고 7인 이상의 다인수가구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리하여 1985년에 와서는, 단독가구의 비율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제주도가 전국에 비해 5인이하의 소인수가구의 비율이 낮고 6인이상의 다인수가구의 비율이 높은 현상을 시현하게 되었다(李昌基, 1992a).

제주도의 가구규모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과 변화양상은 장남분가로 인한 핵가족화, 일제하의 과도한 인구이출과 4·3사건에 의한 남성인구의 결손, 남성인구결손에 따른 무배우여성의 증가, 무배우여성의 증가로 인한 1960년대 초까지의 낮은 출생률,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출생률 상승, 1970년대 이후 결손인구층의 퇴조, 대학교육의 보급에 따른 젊은층의 단독가구화 등의 요인들

이 시기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것은 제주도가 근대에 경험한 깊은 역사적 상흔을 반영하는 것이며, 점차 그 상처를 치유하고 일그러진 가구구성이 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李昌基, 1992a).

## 2. 家口構成

가구의 구성형태는 가구원들의 세대구성과 결합형태 및 가구원의 범위등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제주도의 가구구성을 세대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이 1세대 가구의 비율이 전국수준보다 월등히 많고, 2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은 전국보다 상당히 낮다. 제주도에서 1세대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장남의 분가율과 단독가구의 비율이 높는데 원인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핵가족화가 촉진된 1980년대에 와서는 전국과 제주도의 차이가 많이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결합형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가구원의 결합형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구로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편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와 <단독가구>도 각각 10% 이상을 점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결합형태는 <자녀+부부+편친>으로 구성된 가구와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기타 3세대 가구>로서 각각 5~6% 정도를 점하고 있다.

<표 3> 세대별 가구구성

(%)

|        | 1966  |       | 1975 |       | 1985  |       |
|--------|-------|-------|------|-------|-------|-------|
|        | 전국    | 제주    | 전국   | 제주    | 전국    | 제주    |
| 1세대    | 7.9   | 16.5  | 10.9 | 19.1  | 16.8  | 20.7  |
| 2세대    | 66.1  | 62.7  | 68.9 | 65.7  | 68.1  | 67.9  |
| 3세대    | 23.5  | 15.8  | 19.2 | 14.2  | 14.7  | 11.1  |
| 4세대 이상 | 2.5   | 5.0   | 0.9  | 1.1   | 0.4   | 0.3   |
| 計      | 100.0 | 100.0 | 99.9 | 100.1 | 100.0 | 100.0 |

【자료】 각년도별 국세조사보고서  
李昌基, 1988:280-282.

이러한 가구원의 결합형태를 전국수준과 비교해 본다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와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제주도가 약간 낮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편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와 단독가구의 비율은 제주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의 다양한 결합형태는 제주도가 전국수준보다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李昌基, 1988).

가구의 결합형태를 이용하여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과도적 가구>(형제, 자매, 오누이 등 혼인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가구), <부부중심가구>, <가구주의 부모 및 조부모를 포함하는 가구>로 분류해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이들 가구유형은 각각 최재석의 <1인가족> <과도적가족> <부부가족> <직계가족>에 대응된다(李昌基, 1988).

<표 4>는 가구원의 결합형태에서 나타나는 제주도의 특성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단독가구(1인가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대신 가구주의 부모나 조부모(또는 손자녀) 등의 직계가족원과 동거하는 비교적 복잡한 가족을 구성하는 경향이 적고 가구구성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lt;표 4&gt; 유형별 가구형태

(%)

|                     | 1975  |       | 1985  |       |
|---------------------|-------|-------|-------|-------|
|                     | 전국    | 제주    | 전국    | 제주    |
| 단독가구(1인가족)          | 4.2   | 12.2  | 7.0   | 12.9  |
| 과도적 가구(과도적 가족)      | 1.9   | 1.1   | 2.5   | 2.3   |
| 부부중심가구(부부가족)        | 73.2  | 71.0  | 74.7  | 73.0  |
| 부모 및 조부모 포함가구(직계가족) | 20.7  | 15.7  | 15.8  | 11.8  |
| 計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각년도 국세조사보고서에서 필자가 재정리하여 계산한 것임.

### III. 家族制度

#### 1. 長男分家

조선중기 이후 이념적인 전형으로서 보편화된 한국의 전통가족은 가계계승과 부계친족집단의

결속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장남은 반드시 부모와 동거함으로써 가족의 창설과 확대, 축소, 해체의 과정이 분명하지 않고, 장남에서 장남으로 이어지는 직계가족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부계·직계·장남에 의해 계승되는 한국가족의 구성원리는 현실의 가족생활 속에서 개인에 대한 집의 우위성, 가장의 권위확립, 부계친족집단의 조직화, 재산상속에서의 장남우대와 조상제사의 장남봉사, 부녀자의 낮은 지위, 정조관념의 강화와 이혼·재혼에 대한 금기의식 등의 특성으로 나타난다(崔在錫, 1966:653-666).

그러나 제주도의 가족은 이러한 한국의 전통가족과 비교했을 때 매우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장남이 결혼한 후 부모가족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이다. 제주도에서는 차남 이하는 말할 것도 없고 장남까지도 결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분가를 하게 된다. 자녀를 모두 성출시킨 부모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해서 생활한다. 그러므로 부모가족과 아들가족이 단일가구를 형성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분가할 때 독립된 가옥을 새로 마련할 형편이 못되거나,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치 않는 홀어머니만 있는 경우에는 가끔 부모가족과 아들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두 가족은 대개 '안거리(안채)'와 '밖거리(바깥채)'로 주거를 분리하고, 경작지를 나누어 따로 농사를 지으며, 취사와 세탁등 일상생활을 각기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간다.

제주도에서도 혼인한 아들과 부모가 동거하면서 한살림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아들이 결혼하여 분가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경우이거나, 부모(대개는 홀어머니)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없을 때에 한한다.

1970년대 중반 제주도 동부의 한 부락을 대상으로 부락 내에 부모나 조부모가 생존해 있는 기혼 장남이나 장손의 분가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崔在錫은, 거의 노동력을 상실한 70대 이상의 무배우자들(홀아버지, 홀어머니, 할머니)만이 아들이나 손자세대의 부양을 받고 있으며, 부부가 모두 생존해 있거나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사망했다라도 노동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처럼 아들이나 며느리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 마을에 아들이나 며느리가 있는데도 독립해서 생활하는 자들 중에는 60대, 70대의 고령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崔在錫, 1976).

제주도의 분가방식 중에서 또 하나 특이한 현상은 부모가 미혼 자녀를 거느리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상의 영혼이 깃든 전래의 가옥과 토지 및 중요 가재도구(젓상이나 제기등)는 장남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칙

이 차남 이하에게까지 연장되면 부모는 아들의 수만큼 이사를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들 내외가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장남의 분가시에는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崔在錫, 1976).

이러한 장남분가의 관행은 재산상속, 제사상속, 가족관계, 부부관계, 가족의식 등 가족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제주도 특유의 가족제도를 형성하게 된다.

## 2. 婚姻과 離婚·再婚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는 남녀의 사회적 접촉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이성간의 교제가 자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매혼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육지에 비하여 남녀의 사회적 격리의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농촌사회에서도 이성교제가 꽤 개방되어 있고, 연애결혼의 비율이 꽤 높게 나타난다.

같은 부락내(혹은 인근부락)에서 혼인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도 제주도의 혼인양식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다. 부락내혼은 육지의 농촌지방이나 다른 도서지역에도 존재하는 혼인양식이지만 제주도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다. 부락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부락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고 각성이 모여사는 부락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부락 내혼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金榮教, 1973, 崔在錫, 1977a). 동일부락이나 인접부락 사이에서 혼인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부계친과 외가친족 및 처가친족이 가까이에서 함께 사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과의 사회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부계친 만의 결속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 밖에 없으며, 문중조직도 발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제주도의 혼인의례는 여러가지 면에서 육지의 전통적인 혼인절차와 매우 상이하다. 그 중에서도 奠雁禮, 交拜禮, 合卺禮 등으로 이루어지는 醮禮儀式이 생략되어 있는 점, 신랑이 신부댁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壻留婦家婚의 혼적이 보이지 않고 혼인 당일 신랑이 신부댁에 가서 곧 바로 신부를 데려와 신랑댁에서 첫날 밤을 맞는 점, 여자와 외가친족이 상객으로 참여하는 점, 신부가 시부모에게 幣帛을 드리는 見舅姑禮의 절차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두드러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崔在錫, 1977c).

이혼율이 대단히 높고, 이혼을 기피하는 사회적 의식이 매우 약한 것도 제주도의 혼인제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다. 1985년 국세조사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이혼자(이

혼에 의한 무배우자로서 현재 재혼하지 않고 있는 자)의 수가 전국 평균 5.9명에 비해 제주도는 11.0명으로 약 2배에 가깝다. 성별이나 연령계급별로 나누어서 살펴 보더라도 남녀 구별없이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제주도의 이혼자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李昌基, 1988:275-278). 이혼자의 재혼율도 제주도에서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이혼발생율의 차이는 이보다 훨씬 크리라 짐작된다.

이혼 발생의 비율은 이혼신고를 집계한 인구동태통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만(韓三寅, 1985) 부락 단위의 사례조사에서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1970년대 중반 제주도 동부 지역의 한 부락을 조사한 崔在錫은 남자 기혼자의 17.7%, 여자 기혼자의 24.1%가 이혼에 의해 초혼상태가 해체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崔在錫, 1977b), 1980년대 중반에는 金惠淑이 서부지역의 한 부락을 조사하여 기혼남자의 9.5%, 기혼여자의 17.9%가 이혼에 의해 초혼상태가 해체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金惠淑, 1986). 이러한 통계를 제주도 전체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 이혼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밝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혼율이 높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는 재혼하는 비율도 높고 재혼을 꺼리는 사회적 관념도 대단히 미약하다. 그러나 사별자와 이혼자 사이에는 재혼에 이르는 양상이 크게 다르다. 남자는 사별과 이혼에 관계없이 고령자가 아닌 한 대체로 재혼을 하지만, 여자의 경우 사별자는 20% 전후만이 재혼을 하는데 비해 이혼자는 80% 이상이 재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崔在錫, 1977b; 金惠淑, 1986).

### 3. 家族關係

직계가족의 형태를 취하는 전통적 한국가족과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장남까지도 분가시키고 노동력을 상실할 때까지 독립해서 생활하고자 하기 때문에 부부와 미혼자녀들로 구성되는 부부가족 혹은 핵가족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제주도의 가족은 개별가족의 독자성이 강하다. 부모가족과 장남가족이 한 마을에서 이웃해 살거나 때로는 한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남들보다 더욱 긴밀한 협동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의 가사업무에 이르기까지 상호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해서 생활해 간다. 제주도의 노인들은 노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의 부양을 받는 것을 오히려 수치로까지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부부 중심의 제주도 가족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친족집단으로부터도 독립된다. 부락내혼으로 인해 부계친과 외가친족 및 처가친족이 동일 부락에 함께 거주함으로써 부계친족이 강하게 결속되지 못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독립해서 생활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친족집단이 개별가족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부중심의 독립된 생활은 자연히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시누이와 올케 사이의 마찰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가족에서 흔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부갈등이나 시누이·올케 사이의 불화도 제주도 가족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金惠淑 1984). 제주도의 부인들이 시어머니의 뜻에 크게 관계치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친정을 드나들 수 있는 것이나,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친동생에게 처럼 평등어를 사용하는 것 등은 며느리의 지위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崔在錫, 1977a).

부부중심의 가족생활은 부인의 자율성과 역할참여의 증대를 가져오고, 부녀자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집안의 중요한 일은 주로 남편이 결정하는 육지의 전통적 가족과 비교할 때 제주도의 가족에서는 남편의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일치형이나 자율형 가족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崔在錫, 1978c; 金惠淑, 1982, 1983).

제주도에서도 가사활동은 주로 여성의 역할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밭농사를 주로 하는 농업의 특수성 때문에 농사일에 여성의 노동력 투자가 특히 많다. 그러나 중요한 일의 결정이나 힘든 농사일은 여전히 남성의 역할로 간주되고 있다(崔在錫, 1978c). 흔히 제주도 가족을 모성중심이라거나(趙惠貞, 1982) 처우위형이라 표현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고, 가사활동 및 농업노동에 여성의 역할참여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제주도 가족에서는 개인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부인이 시집을 올 때 지참하고 온 재산이나 스스로 벌어서 마련한 가족들을 부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벌어들인 품삯을 가게에 통합하지 않고 자녀들 몫으로 따로 관리하는 모습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미혼의 아들이나 아직 분가하지 않은 아들부부에게 토지의 일부를 잠정적으로 할애하여 그 수확으로 아들이나 아들가족의 잡비를 충당하도록 하기도 한다. 길흥사시의 부조 특히 결혼시의 부조가 가족을 단위로 하지 않고 개인단위로 주고 받는 것은 개인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 따라서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 IV. 財産相續과 祭祀相續

##### 1. 財産相續

철저한 분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諸子均分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여러 아들들에게 한꺼번에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혼인해서 분가할 때 마다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 때 그 때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장남이 더 많이 분배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막내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모든 아들들에게 재산을 꼭 같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모든 아들들에게 비슷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매우 많다(崔在錫, 1976).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사보고가 대체로 균분상속의 경향을 강하게 전하고 있지만 제주도 전역에 균분상속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장남우대상속 혹은 장남단독상속의 전통을 지속해 오고 있는 집안이나 부락도 더러 발견되고 있으며, 조상전래의 가옥이나 토지(祖上田이라고 한다)는 장남에게 물려주고 자기가 당대에 일군 재산은 아들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는 지역도 있다(玄容駿, 1973; 李昌基, 1992b).

제주도의 재산상속이 균분상속의 경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딸들에게는 결혼시에 혼수를 작만 해 주는 외에 별도의 재산을 상속해 주지는 않는다. 다만 아들들에게 모두 재산을 분배하고서도 재산에 여유가 있거나 재산분급 후 상당한 재산의 증식이 있을 경우에는 딸들에게도 別給의 형태로 증여하기도 한다. 이 때는 물론 딸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외손자 등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에는 자신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재산의 일부를 남겨 두었다가 자녀들을 모두 분가시킨 뒤 노부부만의 생활자원으로 삼는다.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만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력이 있는 동안은 자식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고 이 재산을 가지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그러다가 너무 늙어서 노동력을 상실하고 취사, 세탁등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갈 수가 없게 되면 비로소 이 재산을 아들에게 맡기고 부양을 받게 된다. 이 재산은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그들의 제사와 묘소관리를 위한 掃墳田 또는 祭越田이 된다.

##### 2. 祭祀相續

제주도에는 장남이 조상의 제사를 전담하는 長男奉祀와 직계자손들이 조상제사를 나누어 봉행하는 祭祀分割의 관행이 공존하고 있다(佐藤信行, 1973; 玄容駿, 1977; 竹田 旦, 1984; 李昌基, 1991, 1992b).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북제주군 구좌읍에서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서귀포시를 거쳐 안덕면의 일부 부락에 이르는 제주도의 동·남지역에는 長男奉祀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리에서 제주시와 애월, 한림읍 거쳐 모슬포에 이르는 섬의 서·북지역에서는 祭祀分割이 하나의 사회적 관행으로서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李昌基, 1991).

長男奉祀가 보편화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장남이 결혼하여 분가하면 제사도 장남에게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장남의 분가와 더불어 일시에 제사를 장남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장남이 분가한 직후에는 아직 장남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분간 부모가 제사를 차리다가 장남의 살림이 점차 안정되어 감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상제사를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崔在錫, 1978a).

제사를 이양할 때에는 반드시 그 제사에 딸린 掃墳田(제주도의 서부지역에서는 이것을 祭越田이라고 한다)도 함께 물려주어야 한다. 소분전이 없는 제사는 이양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되기도 한다. 장남이 제사권을 계승하는 경우는 掃墳田도 장남에게로 이양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균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남우대 상속으로 비춰지기가 쉽다. 실제로 이 소분전은 대개 종손 명의로 등기를 하고, 종손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 임의로 처분하는 예가 흔히 있기 때문에 장남의 사유재산처럼 운용되는 경우도 많다.

제주도의 서·북지역에는, 長男奉祀의 원칙을 지켜오는 집안이나 부락도 많이 존재하지만, 조상제사를 직계자손들이 나누어 봉행하는 祭祀分割의 관행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제주시의 서부에서 부터 애월, 한림에 이르는 지역에 제사분할의 관행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가장 전형적인 사례도 이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李昌基, 1991).

제사분할의 관행은 전남 진도군, 경남 통영군, 강원도 삼척군 등지에서도 행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지만 제사를 분할하는 양식과 분할된 제사를 계승해 가는 방식은 제주도와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李昌基, 1991, 1992b).

전남 진도나 강원도 삼척지방에서는 父의 제사는 장남이, 母의 제사는 차남이 모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이와 같은 정형화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제주도에도 장남이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차남이 어머니의 제사를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기대된 양식은 아니다. 때로는 장남이 어머니의 제사를, 차남이 아버지의 제사를 모실 수

도 있고, 장남이 조부모나 그 윗대의 제사를 물려받았을 경우에는 차·삼남이 부모의 제사를 봉행할 수도 있다. 누가 어느 조상의 제사를 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상의 수와 직계 남자 자손의 수, 그리고 자손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진도나 삼척 지방에서는 忌祭祀만 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기제사뿐만 아니라 茶禮까지도 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제사를 분할하면서도 다례는 장남이 전담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제사분할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집안에서는 특정 조상 내외분의 다례를 담당할 봉사자를 명절별로 지정함으로써 대개 다례도 분할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제사와 다례의 봉사자가 상이한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이다.

조상제사를 직계자손들이 분할하면서 적절하게 분배하기 어렵거나, 고르게 분배하고도 남는 제사가 있을 경우에는 몇몇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그 제사를 모시는 수가 있다. 이러한 제사를 제주도에서는 ‘돌림제사’라 부른다. 朝鮮中期까지 士大夫家에서 널리 행해졌던 ‘輪回奉祀’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날 제주도에 ‘돌림제사’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라 생각된다(李昌基, 1991).

일단 분할되어 배정된 제사는 대체로 그의 직계자손들에 의해 계승된다. 분배받은 제사에 자기 부부의 제사를 합하여 아들들에게 적절히 재분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분배된 제사를 직계자손에게로 계승시키지 않고 방계친에게로 이양하는 예는 그리 흔치 않다. 그러나 특정 자손의 제사부담이 과중해 지거나 사회경제적 상황에 변동이 생겨 제사를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방계친에게로 이양되기도 한다.

제주도의 제사분할은 균분상속을 경제적인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玄容駿, 1978; 李昌基, 1991). 제사분할의 역사가 오래되었거나 분할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가문에서는 재산을 균분상속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남우대상속 혹은 장남단독상속이 이루어졌는데도 제사를 분할하는 경우도 흔히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개 제사분할의 역사가 오래지 못하고 근대에 와서 제사를 분할하게 된 가문인 경우가 많다.

제주도에 현존하는 제사분할은 조선시대의 윤희봉사를 계승한 것과 장남봉사를 시행해 오다가 근대에 와서 새로이 제사를 분할하게 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가 수효는 매우 적다고 하더라도 제사분할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새로운 제사분할의 준거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 제사양식의 원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필자는 이미 조선시대의 분재기의 확인을 통해서 제주도의 제사분할역사가 1700년 전후까지 소급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李昌基, 1991).

## V. 親族關係

## 1. 父系親族組織의 弱化

장남분가, 부부중심의 가족 생활, 부락내혼, 균분상속과 제사분할의 전통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제주도의 가족제도는 전통적인 한국가족에 비해 부계친족의 결합성과 조직력이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동족집단에서는 결합범위에 따라 대소의 동족조직이 중첩적으로 결성되어 다양한 문중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한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특정 조상의 묘지 수축이나 비석 건립 및 족보의 발간 등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동족조직이 현재화되는 경우는 더러 있더라도 문중조직이 항시적으로 존재하면서 지속적인 문중활동을 전개하는 예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제주도에서 부계친족집단이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宗孫과 門長 및 有司의 존재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동족집단은 종손과 문장을 중심으로 동족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이들을 특별히 우대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대외적으로 문중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동족성원을 통제하는 문장의 존재가 매우 희미하고, 문중 일을 처리하는데 종손이 특별히 우대되지도 않는다. 종가나 종손을 도와 주어야 한다는 補宗觀念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장남봉사의 전통을 가진 지역이나 가문에서는 조상제사를 종손이 전담하고, 掃墳田이 종손에게 귀속되며, 제사의례시에 항상 初獻을 담당하는 등 제사와 관련해서 종손의식이 다소 선명하게 나타날 뿐이다. 지속적인 문중활동이 없기 때문에 동족집단의 실무 담당자인 유사의 존재도 공식화되지 못한다(崔在錫, 1977a).

동족집단 중에서 가장 강한 결합성을 보이는 당내집단과 부락단위의 동족집단도 뚜렷한 집단 의식이나 결합성을 보이지 않는다. 당내집단은 기제사를 함께 지내고 길흉사시의 부조를 남들보다 다소 많이 하는 정도로 관계의 친밀성을 표출하고 있으며, 부락단위의 동족집단은 중심 조상의 묘사시에 일시적으로 현재화될 뿐 여타의 조직적 활동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본다면 제주도의 부계친족집단은 조상제사나 별초 등 조상숭배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비조직적인 의례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결합성을 보이고 있을 뿐 동족집단의 조직화나 그 조직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활동은 매우 약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 2. 外家親族 및 妻家親族과의 긴밀한 關係

부락내혼을 많이 하는 제주도에서는 부계친족집단의 결속이 매우 약하고 조직화되지 못한 반면에 외가친족이나 처가친족과의 관계는 육지의 전통적인 가족에 비해 훨씬 긴밀하다.

한 부락내에 외척이나 처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친족관계를 조사한 崔在錫의 보고에 의하면 제사를 제외한 사교관계, 의례적 관계, 생산활동의 협조, 가사활동의 협조등 생활의 전 영역에서 부계친과 외척(처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동등하게 긴밀한 협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崔在錫, 1977a).

외가친족과의 긴밀한 관계는 결혼시의 상객구성에서 잘 나타난다. 상객은 혼주보다는 손아래이고 당사자 보다는 손위인 남자 2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1명은 반드시 외가쪽 친족원이 맡는다. 보통 숙부와 형 중에서 1명, 외숙 중에서 1명이 선택된다. 남자 상객과 함께 신부를 수행하기 위해 여자도 상객으로 참여하는데 여자 상객이 2명일 경우에는 그 중 1명은 반드시 외가 친족이 된다. 보통 숙모와 외숙모가 담당하는 것이 전형적이다(崔在錫, 1977a).

부모의 임종을 맞게 되면 장남이 만상주로서 상례의 전 과정을 주관하지만 장례의 경비는 여러 상주들이 적절하게 분담하게 된다. 특히 딸의 시댁에서 장례일의 조반이나 점심식사를 담당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부락 내에 거주하는 딸의 시댁에서 장례일의 조반을 준비하게 되면 상두꾼과 일보던 집안 친척 등 모든 사람들이 딸의 시댁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된다. 이 때의 음식준비와 접대 등 일체의 업무를 딸의 시댁식구들이 담당하고 상가집 사람들은 거들지 아니한다. 만약 장례일의 점심을 맡게 된다면 딸의 시댁 식구들이 음식을 준비하여 장지로 운반해 와서 상두꾼들과 문상객들에게 대접한다. 또 임종 후부터 성복 때까지 상주는 4촌 범위의 가까운 친족들이 쭉어 오는 죽을 먹어야 하는데, 특히 망인의 사돈은 반드시 죽을 한 허벅 쭉어 오지 않으면 안되도록 관례화 되어 있다(玄容駿, 1977; 崔在錫, 1979:320). 장례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역할분담은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과 긴밀하게 협동하는 제주도 친족제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도 서부지역에서는 장례시에 상두꾼들을 대접할 떡을 가까운 친족들이 의무적으로 만들어 오도록 하는 '고적'이라는 관행이 있다. '고적'을 행하는 범위와 양을 살펴보면 부계 사촌까지는 쌀 두말분의 떡을 해 와야만하고, 5촌부터 8촌까지는 쌀 한 말분의 떡을 해 오도록 관습화되어 있다. 외사촌, 고종사촌, 이중사촌도 친사촌과 마찬가지로 쌀 두 말분의 떡을 해 오도록 되어 있

다(玄容駿, 1973, 1977). 고종사촌과 이종사촌에게는 강제성이 다소 완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부계 친 이외의 친족과도 부계친 못지 않게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제주도에서는 육지의 전통적인 한국가족에 비해 부계친족의 결합성이 매우 약한 반면 부계친 이외의 친족 즉 외척이나 처족(인척)과의 관계가 긴밀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VI. 濟州島 家族制度의 非父系的 要素와 父系的 要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의 가족제도는 조선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와는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상이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장남분가와 재산의 균분상속경향, 제사의 분할,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약화, 부락내혼, 문중조직의 약화, 외가친족 및 처가친족과의 긴밀한 협동 등은 부계의 원리를 강조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는 공존하기 어려운 비부계적 요소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전통적인 한국가족의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계적 요소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조상제사를 중시하고 제사를 담당할 아들을 선호하며, 後嗣를 얻기 위한 축첩과 양자제도 등이 제주도 가족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으로 알려진 사혼의 관행(崔在錫, 1978b)도 봉사손의 입양을 위한 장치로서 부계적 원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오랫동안 한반도의 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면서도 가족제도와 친족제도에 관한 한 한국의 전통가족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원리를 달리하는 부분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계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비부계적 특성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두가지 모습은 일견 양립할 수 없는 상호모순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공존해 왔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가족 및 친족제도 속에 상호 양립하기 어려운 두가지 원리 즉 부계적 요소와 비부계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제주도의 가족제도에서 상반된 두가지 원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 대응하여 스스로의 삶을 영위해 가고자 하는 두가지 생존전략 즉 적응의 메카니즘과 초월의 메카니즘으로 설명하고자 한다(李昌基, 1992c).

한국의 전통가족과 상이한, 그래서 보다 더 제주도적이라 인식되어 온 소위 비부계적 특성들은 열악한 환경에 합리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제주인의 생존전략 즉 적응의 메카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빈약한 자원과 매우 열악한 기후풍토 속에서 가족노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여 최대한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조가 단순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제주도의 농업생산 방식은 수리시설의 공동이용과 집약적인 노동투입을 필요로 하는 수도작 농업이 아니라 개별적인 노동투입이 용이한 전작농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전작농업과 나잡어업에 여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성원의 수가 많고 구성이 복잡한 친자 중심의 가부장적 직계가족보다는 남녀의 지위가 비교적 평등한 부부중심의 핵가족적 형태를 유지하기가 더욱 쉬운 것이다. 또한 합리적 적응의 강조는 능률과 실질을 추구하게 되며, 주민들의 사회관계도 부계친만의 폐쇄적인 결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친가, 외가, 처가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긴밀히 협동하고 결합한다. 이와같이 실질과 능률을 추구하고 합리적 적응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제주인의 생활여건이 의식구조에 있어서는 합리주의, 실용주의, 개인주의를, 생활태도에 있어서는 소박하고 근검절약하는 태도를 형성시키게 하였으며, 가족제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한국가족과 상이한 소위 비부계적 특성들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전통적인 한국가족과 매우 흡사한,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소위 부계적 특성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필자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여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초월의 메카니즘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는 신앙의 형태로 표출된다. 자원이 빈약하고, 토질이 척박하며, 기후의 변화가 매우 심한 제주도의 환경조건은 인간으로 하여금 적응의 한계를 절감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을 한층 가중시키게 한다. 제주도가 안고있는 이러한 환경조건은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적응을 강요하는 조건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자에 의탁하여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원초적 동기를 자극시키게 된다. 제주도에 각종 민간신앙이나 무속이 성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지가 바탕이 되는 것이며, 조상신을 숭경하고 제사를 중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조상은 단순히 <먼저 살다간 자>가 아니라 자손의 길흉화복을 주재할 수 있는 절대자로서 신격화 된다. 명당을 찾아 조상을 안장하고 후히 제사지냄으로써 조상의 음덕이 자손의 현실생활에까지 미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상제사를 담당할 아들의 획득이 중요시되지 않을 수 없고, 그를 위한 축첩, 양자, 사혼 등의 관행이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봉사손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외손봉사>나 <까마

귀 모른 식개>를 통해서라도 제사를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 가족제도에서 나타나는 두가지 상이한 원리는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두가지 대응양식 -적응의 메카니즘과 초월의 메카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모순된 원리의 양립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두가지 원리의 공존인 것이다. 그것이 모순으로 비춰지는 것은 부계의 가계계승을 핵심원리로 하는 한국의 전통가족을 보는 시각으로 제주도 가족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金榮敦, 1966 <濟州島民의 通過儀禮(상·중·하)> 「제주도」 32, 33, 34. 濟州道.
- 1973 <通過儀禮> 「濟州道 文化財 및 遺物 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 金惠淑, 1982 <夫婦間의 意思決定에 관한 研究(I) -濟州道 農·漁村 家庭을 中心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0-3, 대한가정학회.
- 1983 <濟州市 家庭의 夫婦間 意思決定에 관한 연구:농어촌 가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한국가정관리학회.
- 1984 <濟州島 家族의 姑婦關係에 대한 研究> 「제주대논문집(사회과학편)」 17.
- 1985 <濟州島의 一人家族研究> 「제주대논문집(사회과학편)」 20.
- 1986 <濟州島의 離·再婚 研究> 「제주대논문집(사회과학편)」 22.
- 1992 <가족의 성격을 통해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여성을 중심으로> 「濟州大 論文集 (인문·사회과학편)」 34.
- 李光奎, 1974 <社會>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文化財管理局.
- 李昌基, 1987 <濟州島 家口의 크기> 「耽羅文化」 6. 濟州大耽羅文化研究所.
- 1988 <濟州島의 家口構成> 「人文研究」 9. 嶺南大人文科學研究所.
- 1991 <濟州島의 祭祀分割> 「韓國의 社會와 歷史」(崔在錫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一志社.
- 1992a <濟州島 家口構成의 變化:1960-85> 「人文研究」 14-1. 嶺南大 人文科學研究所.
- 1992b <濟州島 祭祀分割의 事例研究> 「民族文化論叢」 13. 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 1992c <濟州島의 社會文化的 特性과 環境 -挑戰·適應·超越의 메카니즘->  
「濟州島研究」9. 濟州島研究會.
- 濟州大 國文科, 1972 <社會背景(倉川里)> 「濟州大國文學報」4.
- 1973 <家族(牛島)> 「濟州大 國文學報」5.
- 1974 <家族·家屋(加波島)> 「濟州大 國文學報」6.
- 1975 <社會背景(中文里)> 「濟州大 國文學報」7.
- 濟州大 學徒護國團, 1978 「海村生活調查報告書」
- 濟州道, 1982 「濟州道誌」
- 趙惠貞, 1982 <濟州道 海女社會 研究> 「한국인과 한국문화」 서울:심설당.
- 1992 <제주 잠녀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全京秀 編 「韓國漁村의 低發展과 適應」 서울:집문당.
- 崔在錫, 1966 「韓國家族研究」 民衆書館.
- 1975 <濟州島 潛嫂家族의 權力構造> 「東洋學」5.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 1976 <濟州島의 長男家族> 「亞細亞研究」19-2. 亞細亞問題研究所.
- 1977a <濟州島의 部落內婚과 親族組織> 「人文論集」23. 高麗大學校.
- 1977b <濟州島의 離·再婚制度와 非儒敎의 傳統> 「震檀學報」43. 震檀學會.
- 1977c <濟州島의 婚姻儀禮와 그 社會的 意義> 「亞細亞女性研究」16.
- 1977d <濟州島 農村家族의 現實的 類型> 「農村問題」3. 梨花女大 農村問題研究所.
- 1978a <濟州島의 祖上祭祀와 親族構造> 「行動科學研究」3.
- 1978b <濟州島의 死後婚> 「韓國學報」13. 一志社.
- 1978c <濟州島의 自生的 核家族> 「世界の 文學」겨울호.
- 1978d <濟州島의 妾制度> 「亞細亞女性研究」17.
- 1978e <濟州島의 養子制度> 「人文論集」23. 高麗大學校.
- 1979 「濟州島의 親族組織」 一志社.
- 韓三寅, 1985 <離婚에 관한 研究(Ⅱ): 濟州道에 있어서의 이혼율과 裁判上離婚에 관한 實態分析> 「社會發展研究」創刊號. 濟州大 社會發展研究所.
- 玄容駿, 1970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Ⅰ)> 「제주대 논문집」2.
- 1973 <家族> 「濟州道 文化財 및 遺物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1977 <濟州島の喪祭> 「民族學研究」 42-3.

泉靖一, 1966 「濟州島」 東京大出版會.

佐藤信行, 1973 <濟州島の家族> 中根千枝 編「韓國農村の家族と祭儀」 東京大出版會.

竹田旦, 1984 <韓國における祖先祭祀の分割について> 「民族學評論」24. 大塚民俗學會.